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6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:한병도・위성곤・신정훈

박정현 • 이해식 • 모경종

이상식 · 양부남 · 김성환

강선우 • 이광희 • 채현일

윤건영 · 김성회 · 김영환

이기헌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 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독립위원회임.

그런데 현행법상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,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. 청문 없이 임명된 위원장이 최근 "5·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"고 발언하는 등 국가폭력 진상을 규명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 바,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위원회의 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진실·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,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65조의2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350호) 및 「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35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"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"을 "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생	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	②
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	
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	
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	
인사청문회를 연다.	<u></u>
1.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	1
소 재판관, 중앙선거관리위원	
회 위원, 국무위원, 방송통신	
위원회 위원장, 국가정보원장,	
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, 금융	
위원회 위원장, 국가인권위원	
회 위원장, <u>고위공직자범죄수</u>	<u>진실·화해를위한과</u>
<u>사처장</u> , 국세청장, 검찰총장,	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, 고위
경찰청장, 합동참모의장, 한국	공직자범죄수사처장
은행 총재, 특별감찰관 또는	
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	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